

회계개혁법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연구

심 태 섭¹⁾

< 요약 >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회계개혁법안의 내용과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이 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회계개혁법안이 꾸준히 마련되어 왔다. 초기에는 기업의 중간이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통제절차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았던 수준이, 2000년대 이후 각종 회계부정이 밝혀지면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같은 강력한 개혁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비교적 오래 전부터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우선 형식적인 법 제정보다는 실질적인 회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당국, 기업, 회계감사인, 그리고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공동 노력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관주도하의 회계개혁보다는 민간인 주도의 개혁이 바람직하기에, 민간 기구를 통한 회계부문의 꾸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주제어 > 회계투명성, 회계개혁, 사베인스-옥슬리법

1)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부교수, (전화) 02-799-1403, (Email)tsshim@dankook.ac.kr,

회계개혁법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연구¹⁾

I.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 묻혀 버린 각종 분식회계 등이 경제위기 전후 기업의 부실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회계투명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는 1997년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동아건설(1998), 대우그룹 12개사(2000), 현대건설(2000) 등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는 SK글로벌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물론 국가신인도의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당국도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시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의 개선을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회계투명성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회계개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개혁법의 상당부분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개혁법을 준용한 것이 많다. 미국의 경우도 Enron사의 대규모 회계부정이 밝혀지면서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극단적인 회계개혁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배경, 기업의 역사, 기업의 관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과연 미국의 제도를 준용한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가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제도를 급격하게 만들고 또한 시행하였기에, 과연 최근에 만들어진 회계개혁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의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각종 회계개혁법안이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최근 30년간 미국의 회계관련개혁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최근에 제정되고 시행된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두 나

1) 본 연구의 기본적인 idea는 Kang(2006)과 김지홍(2006)에서 얻어 왔음을 밝히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의 법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관련 개혁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의 흐름²⁾

본 절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회계개혁법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기업의 accountability,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보다 윤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주주의 경우 본인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기대는 관련법과 규정의 테두리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기대를 이루어진다면, 그 대가는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많은 주주들은 경영자의 법과 규정에 대한 준수문제를 포함하는 경영의 윤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경영을 위해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개혁법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각종 법안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성공적으로 회계개혁법을 시행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미국에서의 개념정리에 대하여 알아본 후,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시대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정립

미국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의 회계절차 위원회에서 1973년에 발표한 회계감사기준(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제1호에서

2) 이 절의 내용은 Kang(2006), 한국공인회계사회(2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는 “내부통제제도는 ①회사자산의 보호, ②회계기록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 ③회사업무의 효율화를 촉진, 그리고 ④회사 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절차에 순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실무 및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AICPA 1973).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회계담당자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경영층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나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AICPA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에,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COSO 1992b)에서는 “내부통제란 기업의 재무정보, 기업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경영진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절차”(COSO 1992b)로 내부통제제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정의에 의한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그리고 정부 등과 같은 여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통제제도란 기업의 accountability와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지배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내부에 설치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달리, 내부통제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됨으로써, 윤리적 가치와 기준을 내부통제제도의 개념적인 틀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COSO(1992b)에서는 미국의 상장법인을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체계를 제공하였다.³⁾ 이러한 포괄적 개념의 틀에 따라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기업의 운영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나 법 규정 그리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에 대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험관리수단으로 내부통제제도가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Kang 2006).

2. 1970년대 이전의 재무보고와 공시

1970년대 이전에 미국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규정은 주식등록과 거래에 대한 법

3) COSO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용은 후술하고자 한다.

규정과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규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자발적인 기업경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그리고 내부통제제도도 기업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그리고 이에 대한 재무보고와 공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때 재무보고와 공시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에서 발표된 기준이었다.

이 당시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의 중간이하 관리자급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통제절차를 단순히 모아 놓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나 최고경영층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는 내부통제제도의 초기 단계이며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제도의 하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3.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 마련 시기: 1970년대

197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것은 “회사의 white-color 범죄”라고 불리는 재무보고의 각종 부정공시사건이었다. 두 번째 것으로는 회계처리와 이에 따른 정보와 기록에 광범위하게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는 컴퓨터에 기록된 각종 회계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외부에 공시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퇴사한 이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고발로 인하여 결국 그 회사는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 이 시기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기업 최고경영자의 범죄행위가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방위산업체를 둘러싼 부채 스캔들이 보도가 되었고, 특히 외국 정부에 대한 뇌물제공의 문제가 많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여러 부패행위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1977년에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FCPA법의 주요 목적은 외국에서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적용으로 기업은 양호한 내부회계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하였으며, 또한 이 법에서는 회계통제제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FCPA법에서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 ① 기업의 자산에 대한 거래를 자세하고, 정확하고 적정하게 회계기록의 유지
- ② 다음 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유지할 것

- (a) 경영자의 일반적 혹은 구체적인 승인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 (b)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는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기업자산에 대한 accountability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거래가 기록되고 있는가?
- (c) 자산에 대한 접근은 허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가?
- (d) 자산에 대한 실사가 적정기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이 FCPA법 이외의 다른 법규에서도 미국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SEC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장기업에 요구하였다(SEC 1977).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의무이다. 기업경영자의 가장 기본적인 관리책임(stewardship)은 회사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주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경영자는 주주와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믿을 만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내부통제제도에서는 모든 재무적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과 보고에만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부회계통제제도는 회계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FCPA법의 중요한 효과로는 우선, 회사가 종전에는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유지를 법적으로 강제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회계통제시스템의 유지책임을 회사에 요구함으로써, 회계부서를 포함한 실무담당자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을 회사의 내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FCPA법에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점은 바로 최고경영자의 진실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FCPA법에 맞는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기업이 유

지하는 것은 경영자의 각종 부정을 방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각종 분식회계를 방지하지는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포괄적인 내부통제도의 마련: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회계전문가들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보다 최근의 모형을 찾으려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COSO)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COSO는 미국회계학회, 미국공인회계사회, 내부감사인협회, 관리회계사협회, 그리고 재무담당자협회로 구성된 민간집단이다. COSO는 1985년에 SEC를 포함한 규제기관,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상장기업이나 기업의 외부감사인에게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출범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⁴⁾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1992년 COSO에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틀에 대한 보고서(COSO 1992b)를 마련하였다.⁵⁾ 이 개념의 틀에는 내부통제제도를 정의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권위 있는 보고서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기업경영활동에 쓰이는 각종 정책이나 규제를 마련하는데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미국공인회계사회가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서 55호에 대한 개정안인 78호 기준서(AICPA 1995)를 마련하면서 COSO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기준서는 감사인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데 책임이 있는 회계전문가는 시스템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제도 모델의 기본적인 요소는 ①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②위험평가(Risk assessment), ③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④정보와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그리고 ⑤감시(Monitoring)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통제환경”은 통합된 통제모형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통제환경에는 ①최고경영자의 성실성과 도덕적 가치, ②개인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고용유지, ③최고경영자의 민주적인 관리철학과 운영스타일, ④분명하고 이해가능한 조직구조, ⑤이사

4) 이 국가위원회는 각 지원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산업계, 상장법인, 투자회사,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5) COSO의 보고서 전문(1992b)과 요약본(한글판 포함)(1992a)은 <http://www.coso.org/>에서 볼 수 있다.

회와 감사위원회의 방침과 행동, ⑥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방식, 그리고 ⑦ 관련법규에 맞는 인사방침과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통제환경은 기본적으로 최종경영자에 의하여 조성되는 조직의 분위기이며, 다른 모든 통제시스템의 요인에 대한 기본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 통제환경은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 조직구성원의 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종업원의 윤리적 행동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성실성, 윤리적 가치 및 운영스타일이 통제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는 경영자의 철학과 운영스타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주주와 경영자의 연결고리이기에, 주주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한다. 이와 같이 COSO의 모델에서는 통제환경의 구성요소에 윤리적 기준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COSO의 내부통제에 대한 포괄적 개념 보고서는 윤리적인 기업경영과 accountability, 투명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미국의 상장법인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장법인의 내규로 적절히 법제화된다면, 회사는 수익성목표와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급격한 경제 및 경쟁환경변화, 고객요구의 변화와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편을 경영자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산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각종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COSO 1995a)

4.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년 이후

자산규모 \$600억에 달하였던 Enron이 2001년 12월에 도산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충격적이면 가장 큰 도산이었다. 이 회사의 도산으로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었고 한때 가장 큰 회계법인이었던 Arthur Andersen이 2002년 6월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곧 이은 자산규모 \$1,000억에 달하였던 Worldcom이 2002년 7월에 도산하면서 Enron의 기록도 추월당하였다. 이러한 충격적인 회계부정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법)을 제정하였다.

SOX법은 상장법인과 그들의 감사인이 적용대상이다. 이 법안은 분식회계를 막고, 재무제표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투자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

도를 강화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SOX법은 회계감사전문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SEC에서는 PCAOB의 위원을 지명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PCAOB에는 5명의 위원이 있고, 이중 세 명은 공인회계사가 아니기에, 실제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들이 공인회계사인 회계전문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PCAOB는 감사, 감사의 질에 대한 통제, 윤리, 독립성이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다른 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SOX법에 포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의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한;
- ② 이사회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구성. 이 감사위원회에서만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독할 수 있음;
- ③ 고위 재무담당자에게 적용될 윤리강령; 그리고
- ④ 내부통제제도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는 경영자의 책임. 이 법 제404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매년 사업보고서에 “내부통제평가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내부통제제도와 재무제표준비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PCAOB에서는 경영자가 내부통제평가보고서에 의견표명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경영자는 COSO의 보고서와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틀을 선정할 때 COSO의 틀을 거의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제도의 개념적 틀은 SOX법과 PCAOB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SOX법은 최고경영자의 윤리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의 압력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1970년대의 FCPA법의 근간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미국의 회계개혁법안: 요약

미국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중간이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통제절차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미국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였다. 이 당시에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제절차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에 제정된 FCPA법은 내부통제제도의 마련을 경영자의 책임으로 강제화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가 회사의 내규로 법제화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법안이었다. 그러나 FCPA법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의 필수요소- 최고경영자의 성실성, 감사인의 독립성,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FCPA법안의 적용으로는 미국기업의 경영자의 분식회계를 막는 데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대규모 회계부정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회계부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대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모형을 찾으려 노력하였던 미국의 회계전문가들로 하여금 COSO를 결성하게 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1992년 COSO에서 발표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틀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시대에 맞고 포괄적인 개념의 틀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의 틀은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데 적용되는 각종 규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이 COSO의 개념적인 틀에는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이 개념의 틀은 2002년의 SOX법에 반영이 되었다.

SOX법은 상장법인의 이사회로 하여금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여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내부통제제도평가보고서”를 연말의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SEC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PCAOB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COSO에서 제시한 개념의 틀을 내부통제제도의 기준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SOX법안은 1977년에 마련된 FCPA법에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기업지배에 대한 감시, 최고경영자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FCPA법의 근간을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행하여야 할 윤리강령도 미국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SOX법안의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accountability,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의 책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내부제도가 되어 가고 있다.

Ⅲ.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의 내용과 과제⁶⁾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개혁법안이

6) 이 절의 내용은 김지홍(2006)의 발표내용의 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새로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규정이 개정되어 적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최근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은 첫 번째로 회계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두 번째로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이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중요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1. 회계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강화 관련 법안

이러한 부류의 법안은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서 중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증 의무화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공개기업의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날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식행위의 절차로 공시서류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회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2004년 4월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인증의 주체로 규정하고(증권거래법 §8 ④), 인증대상이 되는 공시서류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간이사업설명서 포함)와 상기 공시서류에 대한 정정보고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공시서류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가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고, 중요사항의 기재·표시의 누락 및 허위 기재·표시가 없고 공시서류 이용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5의8 ②).

7) 이하의 내용은 최근 회계개혁법안의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홍(2006)을 참조하시오.

만일,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인증한 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하여 유가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이사는 손해배상책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신고서 미제출시 제출대상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종전의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나, 종전의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관련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민사책임대상을 사실상 업무지시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였다(증권거래법 §1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미국의 내부회계통제제도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마련을 법제화하였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의 2).

(3) 기타

위에 언급한 법안이외에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등의 법안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이러한 부류의 법안은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서 중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연결재무제표 공시 강화

2005년 3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83의3)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제출기한이 90일로 단축되었다(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전의 개별재무제표중심의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그 제출기한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결재무제표중심의 공시가 강화가 되었다.

(2) 재무제표의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

정되도록 되어 있고,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한이 지연됨으로써 시장으로의 정보흐름이 늦어지고 시장의 정보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6년 3월에 “기업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였다. 즉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즉시 공개하되, 다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회사의 결산자료가 최대한 빨리 투자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공시가 되어 정보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3) 기타

위에 언급한 법령이외에 공개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매수권(stock option)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선을 하였다.

3.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강화

이러한 부류의 법안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서 중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제한

종전에는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컨설팅업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이 동일한 피감사업체에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2003년도에 공인회계사법

을 개정하면서 일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였다. 즉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①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③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리고 ④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면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보다 공정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로 시행되었다.

(2) 기타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감사조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였다.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서는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감사조서에 대한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금지하였다.

4.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의 과제

이상의 언급한 우리나라의 여러 회계개혁법안의 특징은 대부분의 법규가 2000년대 이후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970년대부터 관련 법안이 조금씩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강력한 회계개혁법안(SOX법)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이 가혹하여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매우 거센 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반발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반발의 크기가 크지 않은 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모든 회계개혁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00년대 이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이 과거의 규정과 같이 형식적인 면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적용이 될 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회계개혁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고 또한 그 실질내용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인 기업, 감사인 등에 대한 독려를 계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주도하에 의한 회계개혁법안의 시행

보다는 민간인 주도- 혹은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계개혁법안을 시행하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전의 한국회계연구원이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개편노력과 같은 민간차원에서 진정한 회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개혁법안의 마련을 위한 지금까지의 여러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거두려면 회계개혁법안의 진정한 목표인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회계개혁법안의 정착을 위하여 정책당국, 기업, 감사인 그리고 투자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회계개혁법안의 내용과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이 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회계개혁법안이 꾸준히 마련되어 왔다. 초기에는 기업의 중간이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는 통제절차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수준이, 2000년대 이후 각종 회계부정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강력한 개혁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전부터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회계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 제정보다는 실질적인 회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당국, 기업, 회계감사인, 그리고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공동 노력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관주도하의 회계개혁보다는 민간인 주도의 개혁이 바람직하기에, 민간기구를 통한 회계부문의 꾸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산업이 경쟁력이 선행되어야 한

다. 한국 기업이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한다는 점과 막대한 투자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자본조달비용이 필수적이다. 자본시장참여자들이 회계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다.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확보는 한국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전제조건인 것이다. 부강한 한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각종 회계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하여 '회계강국'으로 우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홍. 2006. 회계제도 선진화 방향 대책 이후. 미발표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미국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 1973. Internal Control - Elements of a Coordinated Systems and its Importance to Management and the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No.1*. New York: AICPA.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 1995. Consideration of Internal Control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An Amendment to SAS No. 55.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No.78*. New York: AICPA.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1992a. Executive Summary to the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http://www.coso.org/publications>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1992b.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http://www.coso.org/publications>
- Kang, Jay S. 2006. Ethical Corporate Conduct & It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a U.S. Public Corporation. Working Paper.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U.S. Congress. 1977. *The Foreign Corrupt Act*. Washington D.C.
-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1977. Securities Release 34-13185.

< ABSTRACT >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Shim, Tae-Sup⁸⁾*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Republic of Korea and to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U. S. In the U. S., to improve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 corporation employs a system of internal controls as a part of its business processes. After many accounting scandals were detect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he U. S. government enacte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In contrast, since economic crisis of Asia in 1997, Korea have prepared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provisions of accounting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the good internal control system is needed and private accounting related bodies make more efforts to monitor the corporations' conduct.

< Key words > accounting transparency, Sarbanes-Oxley Act

8) Associate professor. Accounting Majo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